



「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4)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형사법의 끝판  
왕" 형사법 오상  
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영역 : 범죄론]

### 9.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카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정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임시저장된 데 불과하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이다.
- ②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된다.
- ③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나,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카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① ⊗(X) ⊙(O) ⊚(O) ⊛(O) ⊜(O)  
 ② ⊗(X) ⊙(X) ⊚(O) ⊛(X) ⊜(X)  
 ③ ⊗(O) ⊙(O) ⊚(X) ⊛(O) ⊜(O)  
 ④ ⊗(X) ⊙(X) ⊚(X) ⊛(O) ⊜(O)

정답 : ④

난이도 : 상

- ⑦ (X)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 미수 X, 기수 O  
 ⑧ (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기맹점에 신용카드를 제

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대판 2008.2.14, 2007도8767).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⑤ (X) [살인예비사건]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①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②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③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⑥ (O) 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⑦ (O) 대판 2021.3.25, 2021도749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착수가 인정되므로

[출제영역 : 범죄론]

### 1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독립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 ②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 ③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 ④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

정답 : ①

난이도 : 상

- ① (O) 기도된 교사(제31조 2항, 3항)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의 가별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공범독립설에서는 이를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보지만, 공범종속설에서는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 ② (X)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 즉 세 가지 범죄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므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없고, 간접정범의 문제가 된다.
- ③ (X) [빼끼주점특수절도공동정범사건]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

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④ (X) [어? 사건]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출제영역 : 범죄론]

### 11.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가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허위의 자백을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동생이 친족간의 특례규정(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 ②

난이도 : 중

- ① (O) 대판 2017.6.19, 2017도4240
- ② (X) [불륜동영상 공갈교사사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12.11.15, 2012도7407).
- ③ (O) 대판 2006.12.7, 2005도3707
- ④ (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